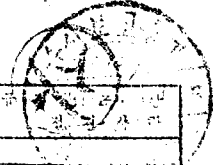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

발문기호 대사신호	2001044-190	(전화번호 28-5036)	진건부
사리기간			
사공연월	77. 6.	대신	부령
사공연월			
1. 2001044-190에 지급할 교육공무원 공무원회 수당 지급 신청 청을 받던 후 별첨과 같이 "서민"에 게재하였던 사실 자료 등 에게 바꿈없이 처리해준 소성의 서훈을 구비하여 77. 7. 지 양위위원회에 활약도록 제출하기 바랍 가 제출처: 국민학교는 총동교회, 중·고교는 중동교회와 현무: 교육공무원 공무원회 수당 지급 신청 공고안 1부 갈 수인처: 구-4, 공민-26. 속 신: 서울특별시장 참 조: 용반할장 제 목: 교육공무원 공무원회 수당 지급 공고 의뢰 1. 2001044-190(75. 12. 12)의 판권입니다.			

원본대조필

원안
교위
6
26

2. 77. 6. 20 자 "시보" 에 별첨 공고(안)를 공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공고(안) 1부 끝

서울특별시 공보 제 호

고유업무원 임명퇴직수당 지급규칙

고유업무원 임명퇴직수당 지급기준 및 수당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고유업무원 임명퇴직수당지급규칙의 수당을 다음 각 항의 범위안다.

1. 수당 지급 대상자

임명료, 종장 보임료로서 지급된 임명료 또는 임명차액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범위안다.

- 가. 연령
 - 1) 60세 이상
 - 2) 신체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 이상

나. 경력 (고유업무, 고유업무, 고유업무임명료 등)

- 1) 30년 이상
- 2) 다른 국외의 임명료는 자는 20년 이상

가) 직급상 준장급 또는 차

나) 직급상 과장급 이하의 장의 직급을 받은 자

다) 직급상 과장급 이상의 장인 퇴직 직급의 직급을 받은 자

2. 수당 지급일 : 1977년 8월 27일

3. 선정기간 : 1977년 7월 27일-7월 30일 (3일간)

4. 선정절차

소정 선정서에 관한 결산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소속 기관 및 부서를 거쳐 시, 도 고유업무에게 제출한다.

5. 지급액

기중 모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액에다 지급액수동 공판금인

6. 지급절차

가. 대상자 결정 범위

지급 대상자의 근무장소 및 소재지는 교육구명장에 기재된다.

나. 수당 지급장소

소속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

7. 기타사항

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

1977. 6.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 록 날